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5
----------	------

발의연월일 : 2016. 8. 29.

발의자 : 문미옥 · 박광온 · 김정우

신경민 · 김현미 · 박영선

조배숙 · 윤종오 · 김종훈

김삼화 · 박경미 · 노웅래

홍익표 · 남인순 · 김해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p> <p>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